

민간조사업 전문직업화에 대한 연구*

이 강 훈*

〈요 약〉

본 연구는 민간조사 전문직업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 방식의 전문직 특징인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 전문지식 편중성의 극복, 전문교과 과정의 편성·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민간조사업, 직업전문화,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강령

* 이 연구는 2011년 11월 5일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제2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조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민간조사 전문직업화 분석
IV. 민간조사 전문직업화 방안
V. 결 론 |
|---|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완벽한 실제적 진실발견 및 국민 개개인의 모든 요구를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민간조사¹⁾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개인 및 기업 등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손상철, 2011: 137).

이와 같이 선진 외국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화된 민간조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조적으로 취약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 의해서 아무런 규제없이 불법적으로 이러한

1) 현재 탐정이란 용어와 민간조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탐정이란 용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탐정이란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비업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과세기준 업종분류표에는 탐정업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향후 용어 사용에서 관련 행정정책계의 정비가 요구된다(정웅, 2010: 229-230).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입법안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있어서도 선호하는 용어들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입법안이나 학계 및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경비라는 용어의 통일성과 탐정이라는 의미의 부정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민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서비스가 제공되어져 오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민간조사제도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해 탐정의 업무는 커녕 ‘탐정’이란 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민간조사활동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사 활동도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보장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국내의 경우 심부름센터 명칭을 빙자한 업소 등의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음성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권영희, 2008: 23).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경제체제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스스로없이 동원하는 등 의뢰인이나 수집되는 정보주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장석현, 2007: 43).

이러한 범죄문제 및 불법적인 피해의 예방 뿐 아니라 공경찰의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국민의 치안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등 공공의 법집행기관의 활동을 보완한다는 측면, 그리고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에 일응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이상훈, 2009: 266)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암약한 업체들에 대해 쉼표를 박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적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김원중, 2007: 210). 따라서 이제는 민간조사 등의 사회적 필요성과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법률생활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조사제도를 양성화하고 나아가 자격제도의 틀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라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황정익, 2006: 141).

이에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하는 민간조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 있으며, 향후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직업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화된 직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조사업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민

간조사 직업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민간조사업

1) 민간조사업의 의의

민간조사는 영어권에서는 ‘Private Investigation’으로 표현되며, 일본에서는 ‘탐정(探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영업법에서는 신용조사와 탐정을 함께 규율하면서 신용조사·탐정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성용, 2008: 40).

영국의 경비업법 제4조는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에 대하여 탐정업은 첫째, 어느 특정의 인물 또는 그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 둘째, 재산이 멸실된 상황 또는 그 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조현빈, 2006: 110).

일본의 경우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에서 탐정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에 있어 해당 의뢰와 관련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그 외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의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민간조사업무란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³⁾ 강성천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민간조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2)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http://law.e-gov.go.jp/announce/H18H0060.html>,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4) 제3조(업무)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따라서 민간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2) 민간조사업의 역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은 일제시대 신용고지업취체규칙(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라는 법령에 따라 신용고지업이라는 것이 있었으며, 5·16 군사혁명 이후 흥신단속업법이 새로 제정(1961년 법률 제728호)된 이후에는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고지업이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흥신소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경제적인 신용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한편 1970년대 이후에는 흥신소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하는 등의 편법적 영업을 주로 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흥신단속업법을 폐지하고 신용조사업법(법률 제3039호)가 새로 제정되어 흥신단속업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 이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어 추가로 신용정보업자외의 자가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마저 금지하여 민간 조사와 관련한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나영민, 2006: 58-59).

1997년부터는 OECD 협정에 의해 회원국 기업의 한국 내에서의 민간조사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의 민간조사회사들은 한국에 지사를 설립, 경비업무와 함께 컨설팅이란 명칭으로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박중수, 2008: 130).

이러한 민간조사업 개방과 더불어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1999년부터는 입법화 노력들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노력은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제출한 ‘공인탐정법안’을 시작으로 2005년 9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2006년 3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각각 ‘민간조사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주무관청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민간조사제도와 업무활동 영역 면에서 일부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단체 등의 이익집단의 견제 등으로 입법화하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0Q9G0Y4F1P0D1I7V4N2_V2U2N1J5X9,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는 데는 실패하였다(이상훈, 2009: 253). 최근에는 2008년 9월 24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0일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이 국회 입법과정에 있었으나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 전문직업화

1) 전문직의 개념

전문직은 유럽 중세시대 장인조합인 길드(guild)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러 견해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이후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존 이외의 많은 사회기능과 형태가 생성·분화되면서 새로운 전문직들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영준·김영규, 2006: 125).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받고 있는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성직자 등이 해당되지만, 현대 사회가 전문화된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현대적 의미에서의 전문 직종의 범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조철욱, 2005: 339)

전문직을 의미하는 영어의 Profession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전문직, 전문직업, 지적 전문직, 직능, 자유직업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石村善助, 1991; 이상원, 2007: 13-14).

전문직이란 장기간 학습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추구에 앞서 공공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전문직의 특성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특수한 지식과 숙달된 능력, 고등교육, 자율과 재량에 대한 제도화된 자기규제 등을 들 수 있다(전용찬·최원석, 2004: 99-102).

전문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직의 논의에서 전문직의 개념은 직업으로서 또는 직업집단으로서 전문직이 가지는 특성들을 나열함으로써 이해된다(김기영, 2008: 317).

Mosher는 전문직업의 의미를 첫째, 확연하게 구별되는 직무영역을 가지고 있고, 둘째, 고등교육을 요하며, 셋째, 직업종사자들의 일생동안 경력을 쌓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Hall은 전문성의 구성요소로 직원의 형성, 훈련기준의 확립, 전문

협회의 조직, 윤리규범상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상원·박주현, 2007: 5). Freidson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전문화된 기술과 훈련, 전문직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이 나 보상, 자발적 결사조직, 윤리강령 그리고 숙련된 서비스나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신·노은호, 2006: 209-210).

전문직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전문 지식 체계, 공식적 훈련 과정, 직업적 독점, 직업 윤리강령 및 자율 규제 등이 일반 직업과는 구별되는 직업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최영준, 2007: 309).

2) 전문직업화에 대한 접근법

일찍부터 전문직의 사회적 형성에 관심을 가졌던 사회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도 전문직업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며, 전문직업화에 대한 연구들은 전문직의 사회적 형성과정에서 역동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지나 역동적 속성을 어떻게 규명하고 인식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김혜영, 2010: 164).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종합하여 전문직 모형을 정립한 Hall(1968)의 모형에 의하면, 전문직 모형은 전문직과 다른 직업들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는 일련의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문직업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문직 모형을 구성하는 속성들은 두 개의 기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이 직업의 구조와 관련된 특성이고, 둘째 유형은 태도적 관점이라는 것이다(김종주, 2000: 44-45).

구조적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Wilensky(1964)의 연구가 있으며, 그는 모든 직업들이 전문직업화 되고자 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전제한다. 전문직업화 과정을 대표적인 전문직들의 최초적인 사건(최초의 훈련, 최초의 대학, 최초의 지역협회, 최초의 전국협회, 최초의 국가 자격법, 공식적인 윤리강령)이 발생한 날짜를 추적함으로써 탐색한다. 연구결과 사건들이 전형적인 흐름이 있다고 밝히고, 전문직업화 과정을 5개의 단계모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Caplow(1964) 역시 과정적 흐름에 의해 전문직업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는데, 전문직업화가 명확한 연속적 순서를 따른다는 점은 유사하다(김혜영, 2010: 164). Caplow(1954: 139-140)는 전문직업화는 예측가능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고 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형성 → 명칭변경 → 윤리강령 제정 →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정치 운동 과정을 제시하였다(김상호, 2006: 8).

〈표 1〉 전문직업화의 변천과정 연구모형

구분	Wilensky(1964)	Caplow(1964)
가정/정의	모든 직업들이 전문직업화 되고자 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	전문직업화는 전문직이 자신의 영역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
전문직업화 과정	전문직의 최초 사건들 전형적인 흐름 1. 특정 일의 전업화 2. 새로운 인원 총력 필요, 이들을 훈련시킬 학교 생성. 3. 권위있는 훈련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협회구성: 전문가 직무, 자격 고양 방법 등에 대한 협회 활동 진행, 핵심적 직무 자각, 공식적인 훈련을 받은 젊은 세대와 실무를 통해 육성된 기존 세대 간의 갈등발생(내부갈등), 유사 직업과의 격렬한 경쟁 발생. 4. 직무 영역 보호, 윤리강령 확고히 하고자 법적 기반을 획득하는 정치적 투쟁 진행. 5. 비자격자와 비도덕적인 사람을 제거, 고객보호, 이상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내용 법규화, 공식적인 윤리장전 확립.	전문직의 기능배제의 단계: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전 단계에서 지속), 관할영역에 대한 지배권 확립, 직업집단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순으로 이루어짐 1. 전문직은 무자격자 제거를 목적으로 명확한 자격 규정하기 위한 전문직 단체 설립함. 2. 독점을 주장, 법적 제한의 근거 수립을 위해 직업명 바꿈. 3.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내세워 무능력자 규제, 내적 경쟁 줄이기. 4. 정치적 운동 통해 자신들 권한 영역 내에서의 무자격자의 직업 활동 불법화함, 자신들의 전문직 직함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기반 수립하려함.
전문직업화 특징	전문직업화의 최종적인 결과로 전문직 지위 획득함. 최초의 발생 사건의 전형성을 전문직업화 경향을 보편화하려 함.	전문직이 전문직업화의 첫 단계에 등장함. 배제의 단계를 통해 전문직업화 과정을 보편화하려 함.

※ 자료 : 김혜영, 2010: 165.

다음으로 태도적 속성은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태도와 행태 사이에 다소간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가정이 옳다면 태도는 전문직업적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리라는 것이다(김종주, 2000: 46).

널리 인용되는 Hall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집단으로서의 전문가 단체의 활용이다. 전문직업인의 사고와 판단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하는 공식 및 비공식 동료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 둘째, 봉사정신이다. 전문직종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한 인식과 해당 업무가 실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규제이다. 전문직업인의 업무 내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동료 전문직업인이며 그와 같은 관행(자기규제)은 바람직하며 실용적이라

는 견해로서 동료 통제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소명감이다. 업무에 대한 헌신과 비록 외적 보상이 적더라도 해당 업무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이다. 외부고객 혹은 상관으로부터의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낸다(김상호, 2008: 299-300).

Hall은 앞서 열거한 구조적 및 태도적 관점들을 결합하여 전문직 모형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로 전문직업화 된 직업들에서는 두 관점이 높은 정도로 존재하는 반면에, 전문직업화가 적게 이루어진 직업들에서는 그것이 낮은 정도로 존재한다고 가정되고 있다(김종주, 2000: 47).

Ⅲ. 민간조사 전문직업화 분석

전문직업화에 대해서 시대상황과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는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최영준·김영규, 2006: 126).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Hall의 전문직업화 모형을 기초로 하여 전문직업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만 민간조사업 직업전문화에 대한 태도적 측면은 연구의 한계상 민간조사업에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전문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구조적인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요소들은 시대나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구조적 접근은 대표적인 연구(Caplow, 1964; Wilensky, 1964)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와 국내 선행연구들(이연택, 1991; 김종주, 1999; 최영준·김영규, 2006; 최영준, 2007; 김혜영, 2010)에서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을 민간조사 전문직업화 분석의 요소로 삼고자 한다.

6)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법적으로 등록된 민간조사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민간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무를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이주락, 2011: 187).

1. 전문협회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직이 사회적 명성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의 보장, 그리고 직업상 자율의 중시 등이 특징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 직종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직업단체가 구성되는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업단체는 구성원들의 도덕적·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그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철욱, 2005: 339).

국내 민간조사와 관련된 협회들을 살펴보면 한국민간조사협회, 한국탐정(민간조사)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2000년부터 민간조사원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조사능력 배양과 인성교육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PI(Private Investigator)분야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의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해외연수 및 협력과 초청 특강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세계최상급 민간조사원 육성을 위한 PI교육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일부는 호주에서 국제자격증을 인정받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업무를 만족하게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후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위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조사업법 제도화 대비에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다.⁷⁾

2004년에는 순수학문적 연구 목적의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한국탐정(민간조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탐정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탐정관련서적 발간, 공인 탐정법 국회 통과 노력, 불합리 관련법 개정 노력 등을 통하여 탐정학 발전을 도모하고 탐정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

또한 2009년에는 대한민간조사협회가 설립되어 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지원 및 홍보업무, 민간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술의 교재연구 및 조사업무 사업, 민간조사업무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취업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조사업무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유대강화 공동발전에 관한업무,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양성에 관련한 민간자격운영과 연수교육에 관한사업, 회원 권익과

7) 한국민간조사협회, <http://pikorea.org>,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8) 한국탐정(민간조사)협회, <http://www.worldspia.com>,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복리 증진, 친목 도모 및 관한 사업,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지원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⁹⁾

연구단체로는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등 관련 연구학회 등이 있지만 민간조사와 관련된 전문 학회로 2010년 12월 4일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립된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가 있다.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는 민간조사, 민간경비 및 관련분야의 연구발전을 통하여 국민 행복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세미나,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의 개최,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도서의 간행, 민간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 국내외 학술교류, 민간조사 연구 분야 및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자문,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⁰⁾

2. 전문지식

민간조사 관련 전문지식을 구성하는 자원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¹¹⁾ 민간조사에 관련한 전문지식은 1999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전문지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위논문이 25편(석사학위논문 22편, 박사학위논문 3편), 국내학술지 논문이 68편, 단행본 12편, 연구보고서가 1편으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전문지식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민간조사 관련 전문지식

구분	편수	주요 내용
학위 논문	박사	3편 - 민간조사 도입 모델 및 도입방안(강영숙, 2006; 최현락, 2008; 정일석, 2008)
	석사	16편 - 민간조사제도/도입방안/법적문제(김원태, 2002; 나영민; 2006; 송봉규, 2006; 김억태, 2006; 정연성, 2007; 신현주, 2007; 정연민, 2008; 이아인, 2011, 장정범, 2011, 김동기 2011; 고지훈, 2011; 한상훈, 2011; 이진수, 2012; 정명석, 2012) - 민간조사 필요성, 역할, 업무범위(공도환, 2008; 권영희, 2008; 박종화,

9) 대한민간조사협회, <http://www.kspia.or.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10)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http://kpisa.tg.to>, 검색일 2011년 10월 20일.

11)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사용된 키워드는 민간 조사와 탐정이다. 키워드에서 제외된 자료, 두 검색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 그리고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들은 제외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 최중윤, 2012) - 민간조사와 관련기관 관계/발전방안(안동현, 2008; 문경환, 2010) - 민간조사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 인식(김향겸, 2011) - 민간조사관 활용성(이선갑, 2009)
국내학술지 논문	5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조사제도/도입(입법화)방안/모델설정/민간조사법안/법적문제/규범학적 고찰(김두현, 2001, 나영민, 2006; 전대양, 2006; 이승주, 2006; 이광수, 2006; 이상원·이승철, 2007; 김명수, 2007; 정일석·박준석·서상열, 2007; 박준석·정연민·이영석, 2007, 나영민, 2007; 김원중, 2007; 이상원 2008; 이승철, 2008; 이상광, 2008;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권영희 2008; 장석현·송병호, 2008; 이상훈, 2009; 이재경, 2009; 조용철·박재풍, 2009; 한상철, 2009; 안영규, 2010; 이승철, 2011; 고지훈·박현호, 2011; 이민형, 2011; 이민형·송영남, 2011; 신현주, 2011; 정일석·박윤규, 2011; 문경환, 2011; 조성구·김태민, 2012; 최중윤·이주락·황세웅, 2012) - 민간조사 필요성/발전방안(김재홍, 2003; 황정익, 2006; 김원중, 2006; 이상철·강영숙, 2007; 박중수, 2008; 박준석·정연민·김영훈, 2010; 박중훈·성도경, 2011) - 민간조사와 관련기관 관계(김원중a, 2006; 김원중b, 2006; 한상철·정병수, 2009) - 외국 민간조사(강영숙, 2006; 조현빈, 2006; 강영숙·김태환, 2006; 박병식, 2007; 전대양, 2007; 이영래, 2008; 이영래, 2009) - 민간조사 교육훈련/자격/시험(조용철, 2006; 이상원·김상균, 2007; 이상원·박윤규, 2007; 송병호, 2008; 정용, 2010; 조민상·김원기, 2012) -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유재두, 2007) - 민간조사원 업무범위(김상균, 2007; 문경환, 2009; 박옥철·김락기, 2011) - 민간조사 규제/관리·감독(정일석·박지영, 2009; 손상철, 2010, 손상철, 2011; 이성용, 2012) - 민간조사원 윤리성(이상원·박주현, 2007) - 민간조사원 활용(신성균·박상진, 2009) -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조성구·이주락, 2011) - 민간조사 퇴직경찰 활용방안(이주락·조성구, 2011) - 민간조사원 활동과 경찰활동 관계(이창훈, 2011)
단행본	1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공인탐정이 뛰다(이동영, 1999) -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강효흔, 2000) - 21세기는 도청을 막고 탐정을 알아야 성공한다 (변종실, 2001) - 탐정학개론(Nemeth, Charles P., 임준태·이동영 공역, 2003; 송병호, 2009) - 프로탐정의 테크닉(김태환, 2004) - 민간조사학개론(손상철, 2005; 김종식, 2010) - 탐정학의 이해(하정용, 2005) - 탐정(민간조사)학개론(강영숙, 2009) - 탐정 가이드북(민진규, 2010) - 탐정학(권창기·김동제·강영숙, 2011)
연구보고서	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황정익·김윤철·백창현, 2005)

※ 자료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및 국회도서관 검색,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3.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국내에서의 민간조사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PI요원에 대한 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오윤성, 2005: 75).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단체 두 곳에서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¹²⁾ 이들 단체에서는 그들의 영리적 목적의 교육을 공인민간조사법안 추진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최고위 자격취득과정이라 홍보하며 지정연수원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조성구·이주락, 2011: 187).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PIA 민간조사사 최고위과정은 주당 9시간씩 총 10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민간조사협회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은 주당 6시간씩 총 8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표3>, <표4>와 같다.

<표 3>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PIA 민간조사사 최고위과정

차	일/시	금요일	토요일		비고
		19:00~22:00	10:00~13:00	14:00~17:00	
1주	2011년 9/2~3	입 교 식 (17:00) (오리엔테이션)	탐정·민간조사법 및 관련법	민간조사학개론	
2주	9/16~17	민간조사심리학 상담기법	미아·가출인 소제파악	PIA정보 및 공작	
3주	9/23~24	필적·문서 위·변조감정	화제감식 조사	지적재산권조사	
4주	9/30~10/1	교통사고조사	사이버 범죄조사	응급처치(CPR)	
5주	10/7~8	직업윤리·인성교육	보험범죄조사	도·감청 탐색	

12) 한국특수직능재단은 2000년 5월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교육원을 신설하고, 2001년 6월 자격기본법에 사설정보관리사(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2001년 9월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PIA 탐정·민간조사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2002년 1월 최초 PIA 탐정·민간조사 특별과정 1기 연구교육을 하였으며, 2002년 5월 (사)한국민간자격협회 자격관리 인증기관으로 등재하여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PIA 탐정·민간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오늘날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한국민간조사협회는 2000년 3월 한국민간조사교육원을 설립하고 동년 5월 한국민간조사자격검정관리협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자격을 검정해 오고 있다(한국민간조사협회, <http://pikorea.org>,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6주	추후공지	청와대 및 국정원 방문 견학 현장 교육 금요일 오후 2시 예정(학회주관)			평일 교육
7주	10/14~15	과학수사 및 지문채취	기업 및 산업보안 탐정·민간조사실무	감시·추적미행 현장 실습	
8주	10/21~22	기업조사 및 채권추심	PIA 무도교육 (태권도·합기도)	PIA 자격훈련 롯데월드 실탄사격장	
9주	10/28~29	민간조사·경호벤처· 창업실무	국가포상제도	PIA자격 시험평가 (학회 주관)	
10주	11/4~5	수료식 (장소: 추후공지)	M,T (협회, 기수대표 협의하여 정함)		

※ 자료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receipt/receipt11.ph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표 4〉 한국민간조사협회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

주	교육내용	교육시간
1	민간조사학개론	매주 토요일 13시~19시
	보험범죄조사	
2	교통사고조사	
	기업회계부정	
3	조사개론 / 범죄심리학	
	FPI 실무 1	
4	사이버범죄조사	
	모바일포렌식 이론	
5	FPI 법과학	
	FPI 실무영어	
6	FPI 장비학 이론 및 실습	
	지문감식 이론 및 실습	
7	FPI 실무 2 / 실탄사격	
	FPI 종합실무 평가	
8	자격검정시험	
	인성교육 / 수료식	

※ 자료 :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ifelong.hansei.ac.kr/new/02curriculum/curri04.as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다음으로 자격과 관련해서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경우 PIA 민간조사사(일반과정)와 PIA 최고위 전문가과정(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PIA 민간조사사는 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및 당 학회 회칙에 의거 PIA 탐정

· 민간조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험)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 탐정·민간조사 자격취득 과정이다. 그리고 PIA 최고위 전문가과정은 자격기본법 및 당 학회 회칙 및 규정에 의거 PIA일반 공개시험과정에서 1차 면제 대상자(전·현직 군, 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 및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탐정·민간조사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민간조사 관련업무 관심있는 자 등)를 당 재단 규정에 의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입교 대상자를 사전 선발, PIA지정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PIA 탐정 민간조사 전문교육과정(이론 및 실기)을 수료 후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PIA 탐정·민간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¹³⁾

〈표 5〉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PIA 민간조사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출제기준	합격기준
1차 (이론과목)	민간조사학개론	25문항	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25문항		
	법학개론	25문항		
2차 (이론과목)	민간조사관계법	25문항		
	민간조사실무	25문항		

※ 자료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guide/guide02.ph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한국민간조사협회의 경우도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PI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기준은 총 평균 70점 이상(단, 출석률 7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세부적인 평가 요소는 <표 6>와 같다.

〈표 6〉 한국민간조사협회 PI 수료증 및 자격증 부여 기준

구분	배점	출제	회수	평가
이론시험	40점	책임강사	1회	책임강사
실습점수	30점	책임강사	2회	책임강사
출석점수	20점			책임강사
논문점수	10점	책임강사	1회	책임강사

※ 자료 :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ifelong.hansei.ac.kr/new/02curriculum/curri04.as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13)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guide/guide02.ph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4. 윤리규정

현대사회에서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기들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윤리강령, 의사윤리강령, 한국신문윤리강령, 공인회계사윤리강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구성원들의 자기규율,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헌신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직업적 활동이 윤리강령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그 직업이 전문적 지위를 가진다는 징표임을 뜻한다(전용찬·최원석, 2004: 213).

이와 같이 전문직업인에게는 통상적으로 윤리헌장(code of ethics)에 구체화되어 있는 일련의 규범적 및 행태상의 기대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기대는 전문직업인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요인이 되며, 특히 이들의 전문분야의 지식으로 인하여 향유하는 의사결정상의 자율성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중주, 박사: 59).

특히 민간조사원에게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비용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수집·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 비리,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 보다 더욱 윤리적인 행동규범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이상원·박주현, 2007: 4).

이와 같은 윤리강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관련 협회들의 윤리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IV. 민간조사 전문직업화 방안

1. 법인화된 전문협회 구성

전문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가 또는 국가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직능단체로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각자의 능력과 활동범위가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인에게公示되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그 구성원의 질적 수준과 능력을 유지하고 행동에 대한 일정한 규율을 부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자기수련과 윤리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김정신·노은호, 2006: 212).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민간조사 관련 몇몇 협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협회의 성격이 법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협회가 협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된 협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법인화된 협회의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화되지 않은 협회 보다 민간조사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¹⁴⁾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민간조사 관련 협회의 법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인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조사가 합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민간조사 업무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¹⁵⁾ 미리 민간조사 관련 협회들의 선행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운영중인 민간조사 관련 협회들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협회의 목적, 사업내용, 지부 구성 등을 정비하여 자생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갖추고 잘 운영해 나간다면 합법화 이후 통합된 협회가 법적 권한을 갖는 협회로 대체되어 민간조사제도 발전 및 직업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민간조사업의 합법화 이후에 유사 협회들의 갈등 및 난립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회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교육과 자격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교육과 자격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지식의 편중성 극복

21세기는 직업의 전문화와 세분화되어감에 따라 직업에 있어 전문성이 더욱 요구

14) (사)일본조사업협회의 경우에도 임의적인 업계의 4단체가 통합해서 이것이 모태가 되어 내각총리대신(국가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경찰청을 감독관청으로 하는 일본 유일의 전국조직으로서 공인된 공익 법인으로 교육 연수회를 통해서 회원의 질적 향상과 윤리의 철저를 도모해,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불평 처리를 실시하는 등 항상 탐정 조사 업계의 건전화에 노력하고 있다.((사)일본조사업협회, <http://www.niityokyo.or.j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15) 강성천 의원 대표 발의 민간조사업법안 제46조(민간조사협회의 설립 등) ①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민간조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상원·김상균, 2007: 630). 전문지식은 전문직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문직의 전문영역을 확보하도록 여타의 직업과 특정직업을 구분하는 도구이기도 하며, 전문직 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전문직구성원 개개인에게 정체성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기영, 2008: 326).

민간조사 관련 전문지식 분석 결과, 민간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9년 1편의 단행본을 시작으로 전문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6년을 기점으로 전문지식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전문지식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민간조사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지식 자원들이 생성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전문지식 생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민간조사 관련 전문지식 내용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민간조사 분야 전문지식 생성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민간조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생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조사업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민간조사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질적 방법 이외의 양적 방법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지식 생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의 개편 및 공인화된 자격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 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없으며, 대표적인 두 단체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민간조사 관련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조사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조성구·이주락, 2011: 188). 또한 이들 기관 간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외국의 민간조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윤리성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편

성, 최소한 교육시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¹⁶⁾

따라서 학계, 협회,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외국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민간조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문지도자 자격 심의와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민형·송영남, 2011: 277-278).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국가 외의 민간단체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 창출을 포함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탐정은 그 성격상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갖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할 정도의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자격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협회의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나아가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일부 악덕 심부름센터나 채권회수대행업체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식으로 직업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될 뿐이다(황정익, 2006: 144). 따라서 자격증 제도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부여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원중, 2007: 210-211).

또한 민간조사 시험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조사분야, 경제금융조사분야, 사이버조사분야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과목에 있어서도 민간조사 분야의 광범한 다양성 수용과 전문성 제고를 고려하여 이를 자격증별로 세분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정웅, 2010: 250).

그리고 현재 협회별로 자격기본법에 의해 부여하고 있는 민간자격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민간조사제도가 법적 제도화가 되었을 때 국가자격제도와 관계 정립도 직업전문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존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거나 승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일부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민간조사보조원 제도¹⁷⁾를 입법과정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6) 외국 민간조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조용철(2006), 이상원(2007), 정웅(2010) 등의 연구를 참고.

17) 민간조사보조원 제도의 도입은 민간조사원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민간

4. 직업윤리강령의 제정

윤리강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윤리 준거 마련의 목적으로 그 직업 종사자들이 규범에 대해 공동으로 정의하고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각 직업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는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계하여 스스로 자극하여 윤리의식을 촉발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기 계발을 강요함과 더불어 사회봉사 정신에 대해 중요하게 느끼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최영준, 2007: 313).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관련 협회의 윤리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 외국의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직업 윤리강령을 마련하는데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탐정협회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탐정협회 윤리강령

탐정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중한 기준으로 대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그들의 업무 수행 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행위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의뢰받은 회원의 업무가 재판시에는 그들의 업무 역할에 적절한 시기에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회원은 다른 탐정 및 전문가들에게도 서로 정직해야 하며 어느 때라도 다른 탐정의 직업적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탐정의 업무수행 시 비윤리적, 불법 또는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정보 및 사실은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된다.
3	회원이 의뢰받은 업무가 사적 혹은 영업상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수임을 자제해야 한다. 고객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탐정이 각자 의뢰받은 업무는 물론, 요금(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탐정의 의무에 대해 그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조사업무에 일정기간 종사케 하여 민간조사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민간조사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정일석 외, 2008: 294). 공인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 중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관련 법규에서도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를 인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실적 필요를 무시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범법자를 제도적으로 양산해 내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정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진입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가까워서 실무를 익히고 장차 공인 탐정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상훈, 2009: 264).

4	회원은 조사 업무상 그들의 고객과 입수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회원은 업무상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유혹이 있을 때마다 윤리적 태도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6	회원은 상호 비방하거나 남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7	회원은 업무 수행과 직업 자체를 규율하는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미 연방 헌법이나 각 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은 모든 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정직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고객을 위한 조사업무 시 획득된 결과에 대해 사실적, 진실적인 발표를 방해하는 사적인 느낌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회원은 자신의 고객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항상 전문적 성장과 훈련기회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회원의 의무는 이상과 같이 전문 탐정을 위해 장려하고 있는 PALI의 지침을 준수하여 가장 우수한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자료 : <http://www.pali.org/ethics.php>; 강영숙·김태환, 2006: 35-36.

일본조사업협회의 윤리강령은 직책 자각, 신의성실, 법령 준수, 인권 존중, 비밀 보관 유지, 자기 연구, 융화 협조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표 8>과 같다.¹⁸⁾

<표 8> 일본조사업협회 윤리강령

1. 직책 자각	가맹원은 업무의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에 기여하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신의성실	가맹원은 조사는 성실하게, 정확을 기해, 요금은 적정으로 해 업자로서의 신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법령 준수	가맹원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항상 법령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상식을 일탈할리가 없게 해야 한다.
4. 인권 존중	가맹원은 항상 인권의 존중하고 옹호해 타인의 명예 권익을 훼손하거나 차별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5. 비밀 보관 유지	가맹원은 업무상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6. 자기 연구	가맹원은 항상 인격을 닦아 업무의 지식 기능의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융화 협조	가맹원은 서로 융화 협조를 하고 단결해 업계의 발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료 : (사)일본조사업협회, <http://www.nittyokyo.or.j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18) (사)일본조사업협회, <http://www.nittyokyo.or.j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따라서 향후 민간조사 관련 직업윤리강령의 제정은 위에서 살펴본 선진 외국의 민간조사협회 윤리강령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민간조사 현실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민간조사원 및 민간조사업자가 건전하고도 걱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자율적 규제로서 이들의 행동준칙 또는 행동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상원·박주현, 2007: 10). 또한 민간조사 관련 협회들은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함께 제정된 윤리강령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분석을 통하여 민간조사업 직업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직업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전문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로 민간조사업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민간조사 관련 협회들은 그 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조사원의 양성, 민간조사의 학문적 토대 구축, 민간조사 관련 법안의 입법화 노력 등 민간조사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국가적 승인을 받지 못해 협회 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지식의 생성과 축적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편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일부 협회에서 각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윤리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조사 분야의 다양

한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활발한 생성을 통하여 전문지식의 편중성을 극복, 전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직업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함하지 못해 민간조사 직업전문화를 통합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 조사, 서베이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문헌을 활용했다는 점 등의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전문직업화를 설명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포함한 통합적인 연구 및 타 직업과의 비교연구 등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하여 민간조사업 전문직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숙·김태환 (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2, 25-50.
- 권영희 (2008).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5권 제1호, 3-32.
- 김기영 (2008).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 313-333.
- 김상호 (2006).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3-30.
- 김상호 (2008). 한국 경찰의 전문직업화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297-319.
- 김원중 (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법학논집 Vol.29, 199-221.
- 김정신·노은호 (2006).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와 자격제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5집, 207-234.
- 김중주 (2000). 한국 도시계획의 전문직업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10). 평생교육사의 전문직업화 과정 분석모형 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157-190.
- 나영민 (2006). 민간조사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55-70.
- 박종수 (2008).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119-148.
- 손상철 (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131-162.
- 오윤성 (2005). 민간조사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토론문. 민간조사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자료집, 73-77.
- 이민형·송영남 (2011).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265-284.
- 이상원 (2007).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9-37.
- 이상원·김상균 (2007).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양법학 제21집, 622-650.
- 이상원·박주현 (2007). 민간조사원의 윤리성에 관한 고찰. 산업경영논총 Vol.14, 43-55.
- 이상훈 (2009).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20, 249-270.

- 이성용 (2008). 민간조사제도와 그 도입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민간조사제도(공인탐정)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37-57.
- 이연택 (1991). 관광산업부문 인력의 전문화 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제15호, 165-185.
- 장석현 (2007). 민간조사업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39-57.
- 전용찬·최원석 (2004). 경찰윤리. 경찰대학.
- 정웅 (2010).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모형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25-261.
-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71-299.
- 조성구·이주락 (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8호, 181-205.
- 조용철 (2006).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117-133.
- 조철욱 (2005).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 조현빈 (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05-125.
- 최영준 (2007). 조리사의 전문직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308-316.
- 최영준·김영규 (2006). 호텔·외식산업의 전문직으로서 소믈리에 전문성제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1(2), 124-130.
- 황정익 (2006).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No.8, 119-154.
- (사)일본조사업협회, <http://www.nittyokyo.or.j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http://kpisa.tg.to>, 검색일 2011년 10월 20일.
- 대한민간조사협회, <http://www.kspia.or.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http://law.e-gov.go.jp>,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한국민간조사협회, <http://pikorea.org>,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한국탐정(민간조사)협회, <http://www.worldspia.com>,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http://www.kspia.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ifelong.hansei.ac.kr>, 검색일 2012년 7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Lee, Ka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plan to improve the profess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actual condition.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4 factors - professional associations, professional knowledge, curriculum & qualification system and code of ethics - were used for the professionalization analysi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ior researches concerning structural aspect of profession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ctual condition analysis, to make an effort for the integration and incorpo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s, to overcome the unequal distribu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s, to organize and operate the professional curriculum, to introduce recognized qualifications system, and to establish a code of ethic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Professionalization,
Professional associations, Professional knowledge, Curriculum,
Qualification system, Code of ethics